

**1) 부정경쟁행위 개념 및 목적**

- (개념) ‘부정경쟁행위’란 민법상 불법행위의 특칙으로서 영업주체가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한 대가의 지불 없이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를 말함**
- (목적)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자유와 창의에 기반을 둔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정경쟁행위 유형**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li> <li>가. 상품주체 혼동행위</li> <li>나. 영업주체 혼동행위</li> <li>다. 저명상표 희석행위</li> <li>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li> <li>마. 출처지 오인유발 행위</li> <li>바. 품질 등 오인유발 행위</li> <li>사. 대리인의 부당한 상표사용 행위</li> <li>아. 도메인이름 부정취득 행위</li> <li>자. 상품형태 모방 행위</li> <li>차. 아이디어 탈취 행위</li> <li>카. 타인 성과물 도용 행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li> <li>- 국가·국장 등의 사용 행위</li> <br/> <li>○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li> <li>-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행위</li> </ul> |
|--|---|

부정경쟁행위 유형		상 세 내 용
제2조 1호	가 목 (상품주체 혼동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목 (영업주체 혼동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목 (저명상표 희석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를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등을 하여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 등을 손상하는 행위
	라 목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목 (출처지 오인유발 행위)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목 (품질 등 오인유발 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목 (대리인의 부당한 상표사용 행위)	국제성을 가진 상표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이거나 대리인 또는 대표자였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아 목 (도메인이름 부정취득 행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부정한 목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에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자 목 (상품형태 모방 행위)	타인이 개발·제작한 상품형태를 모방하여 자기의 상품으로 시장에 제공하는 행위
	차 목 (아이디어 탈취 행위)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 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카 목 (타인의 성과물 도용 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	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 불가
제3조의 2	자무유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3) 부정경쟁행위 조사·시정권고 제도

- (목적)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 또는 직권조사를 통해 인지된 부정경쟁행위(아, 카목 제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근거법: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20조 등

- (신고접수)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www.ippolice.go.kr](http://www.ippolice.go.kr)) 접속 → 부정경쟁행위 신고안내 → 신고서 양식작성 → 제출

#### < 부정경쟁행위 상담·신고 >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
◆ 전 화 1666-6464	◆ 전 화 02-6196-2016
◆ 팩 스 042-481-8257	◆ 팩 스 02-2183-5899
◆ 이메일 pms8546@korea.kr	◆ 이메일 5837@koipa.re.kr

-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절차) 약 2~6개월 소요

